

서울교육대학교와 세계움직임교육센터 한국 본부 및 일본 지부 간의 움직임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세계움직임교육센터 한국본부 및 일본지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모든 사람의 움직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 사이의 교육, 학술연구 및 협력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이 양해각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세계움직임교육센터 한국 본부 및 일본 지부가 움직임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력 내용) 각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 ① 움직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 ②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
 - ③ 세미나, 이벤트행사 등 움직임교육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④ 기타 움직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3. (신의 및 비밀유지)
 - ① 각 기관은 상대 기관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며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관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통해 획득한 상대 기관의 정보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효기간)
 - ① 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 ② 이 양해각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종료 또는 변경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5. (변경 및 해지)

- ① 이 양해각서의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6. (해석) 이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각 기관은 위와 같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2부씩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0. 5.

서울교육대학교

세계움직임교육센터
한국 본부

총장 김경성

이사장 김두련

金 慶 成

金 斗 連

서울교육대학교

세계움직임교육센터
일본 지부

평생교육원장 김창복

이사장 오가와 카즈에

金 昌 福

小 川 一 江

動き教育活性化のための覚書

ソウル教育大学と世界動き教育センター 韓国本部および日本支部（以下「各機関」という。）は、人の動き教育活性化のために両機関の間の教育、学術研究や協力などの業務協約を締結する。

1. (目的) この覚書は、ソウル教育大学と世界動き教育センター 韓国本部および日本支部が、動き教育の普及と活性化のために相互に協力し、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協力内容) 各機関は、次の事項について、人的・物的交流及び協力事業を推進する。

- ①動き教育プログラムの運営のための相互協力
- ②新規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研究のための相互協力
- ③セミナー、イベント行事などの動き教育普及のための相互協力
- ④その他の動き教育活性化のための教育および事業の相互協力

3. (信義および秘密保持)

- ①各機関は、相手機関の品位と名誉を尊重し、覚書の規定する事項を信義を持って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各機関は、この覚書の履行を通じて獲得した相手機関の情報や秘密事項を相手機関の書面による同意なしに第三者に提供したり、開示してはならない。

4. (有効期間)

- ①この覚書の有効期間は、代表者が署名した期日から効力が発生すると同時に3年間有効になる。
- ②この覚書は、有効期間が満了する1ヶ月前までに、各当事者の一方から終了または変更に関する書面による通達がない場合、自動的に1年間延長される。

5. (変更と解約)

- ①この覚書の重要事項の変更が必要な場合は、相手機関にその内容を書面で通知した上、協議するものとする。

②この覚書に記載していない事項、または、今後の交流協力活動のための追加事項が生じた場合、各機関と合意した上、その内容を追加するものとする。別途協定書を用意するものとする。

6. (解釈) この覚書に記載されていない事項や解釈上の異議がある場合には、各期間の間の協議を通じて決定する。

各機関は、上記のように覚書が締結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覚書を韓国語と日本語で各1部ずつ作成し、それぞれ1部ずつ保管する。

2018. 10. 5.

ソウル教育大学校

世界動き教育センター

韓国本部

総長 金慶成

理事長 金斗連

金慶成

金斗連

ソウル教育大学校

世界動き教育センター

日本支部

平生教育院長 金昌福

理事長 小川一江

金昌福

小川一江